

# 입학업무 회피·제척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6. 04. 08.

담당부서 입학관리팀(02-950-5403)

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회피)	제3조(제척)	제4조(특수관계자)
제5조(기타)			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업무 회피 및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회피)**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원자와 친·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는 입학전형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.

**제3조(제척)** 지원자와 특수관계로 인해 공정한 입학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사자를 입학전형 업무에서 배제한다.

**제4조(특수관계자)** 4촌 이내의 친족, 지연, 학연, 거래 및 기타 관계자로서 사회통념상 입학전형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.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5조(기타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.